

한국전자인증(주) 인증서비스 이용약관 V4.9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및 적용 범위)

본 약관은 전자서명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전자서명관련법" 이라 한다)과 한국전자인증주식회사(이하 "한국전자인증"이라 한다)의 인증업무준칙에 의하여 제공하는 인증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서명생성정보"라 함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2. "전자서명검증정보"라 함은 전자서명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3. "인증"이라 함은 전자서명 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인증서"라 함은 한국전자인증이 발급하는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5. "등록대행기관"이라 함은 한국전자인증으로부터 인증서비스 가입신청서의 접수/처리 및 신원확인 업무를 수행하거나, 전자적 방식으로 수집된 인증서 신청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신청 절차의 적정성 확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가입자"라 함은 한국전자인증으로부터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인증 받은 자를 말한다.
7. "이용자"라 함은 한국전자인증이 발급한 인증서를 이용하여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와 전자서명검증정보의 합치성을 확인하려는 자를 말한다.
8. "가입자 정보"라 함은 가입자에 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가입자를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및 생체특성 등에 관한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가입자를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9. 사고정보: 전자금융사고 또는 공동인증서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가입자의 기기정보 및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를 말한다.
10. "비대면 신원확인"이라 함은 휴대폰 본인인증, 신분증 진위확인, 셀카인증, 계좌인증 등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한국전자인증의 신원확인 기준에 따라 직접 대면에 준하는 비대면 방법을 통하여 가입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1. "비대면 인증"이라 함은 비대면 신원확인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인증을 말한다.
12. "본인확인기관"이라 함은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대체수단을 통해 본인을 확인하는 자로서,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3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지정 받은 기관을 말한다.
13. "본인확인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 1) 성명, 성별, 생년월일, 내·외국인 구분 정보

2) 연계정보(CI):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등록번호와 공유 비밀정보를 이용해 생성한 암호화 식별정보로, 여러 서비스에서 동일인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3) 중복가입확인정보(DI): 특정 서비스에서 동일인이 중복 가입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생성한 암호화 식별정보

4) 기타 인증서 실시간 유효성 확인에 필요한 정보

14. "본인확인서비스"란 가입자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본인확인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를 사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기관이 가입자의 동의 하에 본인확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원을 검증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 3 조 (약관과 인증업무준칙의 명시 및 개정)

① 본 약관과 인증업무준칙은 한국전자인증 홈페이지(<https://www.crosscert.com>)에 공지하고, 본 약관에 동의한 가입자 모두에게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한국전자인증은 관계 법령의 개정, 서비스 개선, 이용자 보호, 보안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과 인증업무준칙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 또는 인증업무준칙이 변경된 경우에는 적용 일자 2 주전에 이를 고지한다. 단,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 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고지한다. 약관 및 인증업무준칙 변경의 고지는 한국전자인증 홈페이지 또는 전자메일의 수단을 통하여 할 수 있다.

③ 가입자가 변경된 약관 또는 인증업무준칙이 고지된 후 2 주 이내(가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30 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화, 전자메일의 수단을 통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 또는 인증업무준칙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 (약관 외의 규정)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전자상거래 등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 2 장 인증서의 신청 및 발급

제 5 조 (인증서비스의 종류 및 인증서신청 수수료)

① 한국전자인증은 인증서의 신규발급, 재발급, 갱신발급, 효력정지, 효력회복 및 폐지 등의 인증서비스와 본인확인기관으로서의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한국전자인증에서 제공하는 인증서 종류와 용도, 인증서신청 수수료 등은 한국전자인증의 홈페이지(<https://www.crosscert.com>)에 게시한다.

③ 제 5 조 2 항의 인증서신청 수수료는 인증서비스 가입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전자인증이 무료발급을 명시하거나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수수료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

제 6 조 (인증서비스 가입신청)

① 인증서비스의 이용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가입신청자"라 한다)는 한국전자인증 또는 가까운 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인증서비스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신원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신청을 받은 한국전자인증 또는 등록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견될 경우, 가입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1. 타인 명의로 신청한 경우
 2. 가입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
 3. 제출된 서류만으로 가입신청자의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4. 납부할 인증서신청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사고정보를 이용하여 발급 신청하였거나 사고정보로 의심되는 경우
 6. 전자서명법 또는 기타 법령에 위반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공동인증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
- ③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신청자는 비대면 방식의 신원확인 절차 및 인증서비스 이용 신청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전자인증은 가입신청자에게 전자서명관련법에 따른 인증업무준칙에서 별도로 정한 비대면 신원확인 및 신원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의 절차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비대면 방식의 신원확인 절차 및 인증서비스 이용 신청 중 중단한 경우, 제출한 비대면 인증정보(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명 서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서류일체 및 휴대폰 본인확인정보, 신분증 진위확인정보, 셀카인증 정보, 계좌인증정보)는 가입신청일 기준 7 일 보관 후 삭제한다.
- ⑤ 한국전자인증과 등록대행기관은 전자서명관련법에 근거하여 가입신청자의 신원확인 및 제출 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 후 인증서 발급코드를 제공한다.
- ⑥ 가입신청자는 인증서 발급 안내를 숙지하여 인증서를 신청한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한국전자인증의 홈페이지(<https://www.crosscert.com>)에 접속하여 인증서 발급코드를 입력 후 인증서를 발급받는다.
- ⑦ 가입신청자가 가입신청 후 인증서 발급가능기간 내에 인증서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증서 발급가능기간의 초과와 동시에 인증서 서비스 가입신청이 취소된다.

제 7 조 (인증서신청 수수료의 환불)

① 가입신청자가 인증서를 발급가능기간 내에 발급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발급 가능 기간 만료일로부터 14 일 이내, 인증서를 발급받았을 경우에는 발급일로부터 7 일 이내에 한국전자인증 홈페이지 또는 등록대행기관을 통해 발급 취소 신청 및 수수료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한국전자인증 또는 등록대행기관은 인증서 발급신청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 3 장 인증서의 효력 등

제 8 조 (인증서의 유효기간)

- ① 한국전자인증이 발급한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1 년, 2 년, 3 년형으로 한다.

제 9 조 (인증서의 이용범위)

- ① 한국전자인증은 개인과 법인/단체/개인사업자에 대하여 공동인증서를 발행하며, 공동인증서의 이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법인/단체/개인사업자(범용): 일반 전자상거래, 금융기관 업무, 정부전자조달/민원업무,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민원업무
 2. 법인/단체/개인사업자(용도제한용): 전자계약 업무, 전자세금계산서 업무, 은행, 보험 및 신용카드 업무, 원산지 증명 업무, 조달 비촉물자 업무
 3. 법인/단체/개인사업자(서버용): 온라인상 서버를 통해 인증서비스를 이용하는 업무
 4. 개인(범용): 일반 전자상거래, 금융기관 업무, 정부 민원업무, 본인확인 용도
 5. 개인(용도제한용): 은행, 보험 및 신용카드 업무, 정부 민원업무, EMR 전자서명 업무, 내부 업무용

제 10 조 (인증서의 효력의 소멸 등)

- ① 한국전자인증이 발급한 인증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효력이 소멸된다.
1.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2. 본 약관 제 1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가 폐지된 경우

제 11 조 (인증서의 효력정지 등)

- ① 한국전자인증은 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의 효력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 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 ② 효력이 정지된 인증서는 효력이 정지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인증서 효력회복 신청이 있으면 그 효력을 회복한다.
- ③ 한국전자인증은 제 1 항,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효력을 회복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ldap://dir.crosscert.com 에 이를 공지한다.

제 12 조 (인증서의 폐지 등)

- ① 인증서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해 인증서를 폐지할 수 있다.
1. 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이 공동인증서 갱신발급, 재발급, 변경, 폐지를 신청한 경우
 2. 가입자가 기망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지한 경우
 3. 가입자의 인증서가 사고정보를 이용하여 발급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4. 가입자의 사망/실종신고 또는 해산사실을 인지한 경우
 5.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가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6. 제 11 조의 규정에 따라 효력이 정지된 인증서에 대한 효력회복신청이 인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없는 경우
 7. 한국전자인증의 전자서명생성정보가 유출된 경우
- ② 한국전자인증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를 폐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ldap://dir.crosscert.com 에 이를 공지한다.

제 13 조 (인증서비스의 정지 및 인증서의 이용제한 등)

① 한국전자인증이 제공하는 인증서비스는 연중 무휴 1 일 24 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인증서비스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서비스용 설비 점검, 보수 또는 공사 등의 필요가 있어 부득이한 경우
2.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인증서비스와 관련한 보안상의 이유로 인증서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4. 전자서명관련법에 의한 인증서비스의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설비점검, 장애, 보안상 필요, 법령상 중지사유에 준하는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② 13 조 제 1 항에 따라 인증서비스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경우 한국전자인증은 지체 없이 가입자에게 이를 고지한다.

③ 한국전자인증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인증서 이용을 일부 혹은 전부 제한할 수 있다.

1. 법정대리인을 통한 신고 및 동의 없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가입한 경우로서 법정대리인이 인증서의 폐지 또는 발급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2.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전자서명관련법에 의한 인증서비스의 중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가입자가 제 6 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한국전자인증이 인지한 경우
5. 가입자의 인증서가 범죄에 이용되는 등 부정하게 사용된 사실을 수사기관의 통보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인지한 경우
6. 한국전자인증이 인증서비스와 관련한 보안절차나 한국전자인증의 전자서명생성정보 유출과 같은 보안상의 이유로 기 발급된 인증서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7. 용도제한용 인증서를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8. 테스트를 위해 발급된 인증서를 테스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테스트가 완료된 경우
9. 해킹, 명의도용 등 인증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 14 조 (한국전자인증의 의무)

① 한국전자인증은 가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보관하는 경우에도 당해 가입자의 동의 없이 이를 이용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한국전자인증은 가입자의 인증서와 인증업무에 관한 기록을 당해 인증서의 효력이 소멸된 날로부터 5 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관리한다.

③ 한국전자인증은 인증서의 유효기간 이내에 당해 인증서의 기재사항 또는 인증서 정보가 정확하고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④ 한국전자인증은 인증업무준칙의 제·개정 내용 및 기타 인증업무 수행 관련 정보 등을 지체 없이 공지해야 한다.

제 15 조 (가입자의 의무)

- ① 가입자는 신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등을 이용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자신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생성하여야 한다.
- ② 가입자는 인증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수집에 실명을 포함한 정확한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하며, 인증서의 유효기간 이내에 당해 인증서의 기재사항 또는 인증서 정보가 정확하고 완전하게 유지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③ 가입자는 자신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이를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위험을 인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한국전자인증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입자는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한국전자인증에 통보한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 4 장 가입자 개인정보보호

제 16 조 (가입자 개인정보보호)

- ① 한국전자인증은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고 정당한 수단에 의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 ② 한국전자인증은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제 3 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한국전자인증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이 가입자의 개인정보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제공할 수 있다.
- ③ 한국전자인증은 가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노출된 개인정보에 대해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④ 한국전자인증은 개인정보의 취급 및 관리, 서비스 운영 등의 업무를 스스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이러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국전자인증이 선정한 회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의 처리 및 관리, 서비스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지한다.
- ⑤ 가입자가 개인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가입자가 이러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인증서비스는 정지된다.

제 5 장 손해 배상

제 17 조 (손해배상)

한국전자인증이 인증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가입자 또는 인증서를 신뢰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전자서명법 제 20 조(손해배상책임)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한다.

제 18 조 (면책)

한국전자인증과 등록대행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가입자 및 이용자가 용도에 합치하지 않은 인증서를 사용한 경우
2. 인증서비스 수행 중 한국전자인증의 시스템 장애가 아닌 통신경로상의 장애로 인해 발생한 손

해 및 등록대행기관 외부의 통신기기 및 통신회선의 장애에 의한 업무처리의 지연이나 불능일 경우 (단, 한국전자인증이나 등록대행기관이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었던 범위는 제외)

3. 가입자 또는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4. 가입자의 전자서명 생성정보 관리 부주의(정보 노출, 분실 등)로 발생한 손해

5. 가입자가 주민등록번호 등 주요정보에 대하여 변경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사고의 경우

6. 한국전자인증이 제공하지 않은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증서비스의 지연 및 중단에 의한 가입자 및 이용자의 손해 (단, 한국전자인증이나 등록대행기관이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었던 범위는 제외)

7. 법적인 효력이 없는 시험용 인증서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8. 한국전자인증 및 등록대행기관이 전자서명관련법 및 관련 기술기준을 모두 준수하였음에도 불가항력적 사유 또는 기술적 한계나 구조적 특성상 합리적으로 예측·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 또는 한국전자인증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사고의 경우

제 19 조 (분쟁의 해결 및 준거법)

① 전자서명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 32 조에 따른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한국전자인증 인증서비스 이용 시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한다.

③ 한국전자인증과 가입자 또는 이용자 간에 제기된 소송에는 국내법을 적용한다.

제 20 조 (경과규정)

본 약관 시행 전 발급된 인증서에 대하여는 종전의 약관 규정을 따르며, 종전의 약관 규정은 한국전자인증의 홈페이지(<https://www.crosscert.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